

방송시청안내서

2023. 6

목 차

1. 방송편성 안내	1
1)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1
2) 방송프로그램 편성	3
3)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5
4)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7
5)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8
6) 방송광고 편성	9
7) 협찬고지 기준	12
8) 방송내용 심의	15
2. 지상파TV 시청안내	17
1) 지상파TV 직접수신 안내	17
2) 지상파UHD방송 시청 안내	27
3) 이동멀티미디어방송	33
4) 지상파TV방송 재송신	35
3. 지상파 라디오방송 청취안내	36
1) 라디오방송	36
2) 공동체라디오	39
4. 유료방송 시청안내	42
1) 이용약관	42
2) 채널구성과 운용	44
3) 방송상품 이용	46
4) 부가서비스	49
5) 요금납부	50
6) 이용계약 해지	52

5. 기타	55
1) 금지행위	55
2) 재난방송	57
3) 장애인방송(폐쇄자막)	60
4) 장애인방송(화면해설)	62
5) 장애인방송(한국수어)	64

1. 방송편성 안내

1)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방송편성

- 방송편성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방송법」 제4조에 의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 방송편성 계획

- 방송사업자는 내부 여건(편성방침, 제작여건, 가용예산 등), 외부 여건(시청자 생활주기, 시청 습관, 시청흐름,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편성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방송사업자는 줄띠편성, 구획편성, 장기판편성, 함포사격형 편성 등 다양한 방송편성 계획을 수립합니다.

●● 방송프로그램 수급

- 방송편성 계획이 수립되면 방송사업자는 이를 편성표로 공개합니다. 시청자는 각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EPG(Electronic Program Guide) 등에서 편성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송편성 계획(편성표)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합니다. 방송프로그램 공급 방식에는 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구매, 중계 등이 있습니다.
 - 자체제작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제작은 한 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외주제작은 한 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계는 다른 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스포츠 경기 등을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방송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 시청자는 방송편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므로, 시청자 의견 수용여부는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2) 방송프로그램 편성

- 방송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채널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채널이란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연속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합니다.
- 방송사업자는 채널을 통하여 방송내용물을 시청자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서 방송내용물은 방송 프로그램, 방송광고 등을 말합니다.

●●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방송내용물 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편성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은 내용이나 형식을 고려하여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 스포츠 등 다양한 유형(장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는 이러한 방송프로그램 유형(장르)을 '방송분야'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도', '교양', '오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종합편성'은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편성'은 특정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은 정부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정책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이하)에 따라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시~11시, 토요일·공휴일 오후 6시~11시)에는 특정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주된 방송분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채널의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이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100분의 70이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00분의 70이상, 데이터방송 채널은 100분의 60이상)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정

- 「방송법」 제11조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 ❖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 ❖ 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규정은 방송분야 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장의 보호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자는 해당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하지만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히,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 지상파TV방송사업자 중 케이앤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KBC), 대전방송(TJB), 전주방송(JTV), 청주방송(CJB), 울산방송(UBC), 지원(G1), 제주방송(JIBS) 등 지역민방 9개사는 SBS의 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역 민방은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매개하는 등 지역성 구현을 목적으로 1990년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민방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을 용인하는 경우, 지역민방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는 TV방송의 경우 9개 지역 민방, 라디오방송의 경우 10개 지역 민방으로 하여금 방송사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표 1-1.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TV방송		라디오방송	
방송사업매출액	편성비율	방송사업매출액	편성비율
10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8 이내	10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8 이내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6 이내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6 이내
1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4 이내	15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4 이내

200억 원 이상 25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2 이내	200억 원 이상 25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2 이내
2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2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1 이내
300억 원 이상 35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0 이내	300억 원 이상 35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70 이내
3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3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400억 원 이상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8 이내	400억 원 이상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8 이내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에 대한 의견 제시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역거주 시청자는 지역민방의 자체편성으로 인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은 지역성이라는 공적 가치 구현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시청자는 관련규정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고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만약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편성에 관하여 불편이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시청자 센터를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란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의무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해당 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 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

- 「방송법」 제69조에 의거 한국방송공사(KBS)는 매월 100분 이상의 TV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방송법」 제70조에 의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합니다.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방영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방송채택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방송채택료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영을 요청한 시청자에게 방송사업자가 이를 편성·방영한 후 지급하는 소정의 비용을 말합니다.

6) 방송광고 편성

-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시간 일부를 광고주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방송광고 수익은 방송사업의 주요 재원이 됩니다.
- 방송광고가 늘어날수록 방송사업자에게는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청자에게는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에서는 방송광고 시간과 형식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방송광고의 종류

- 방송광고의 종류에는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가 있습니다.
 - **방송프로그램광고**란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 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에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 **중간광고**란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 **토막광고**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 **자막광고**란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를 말합니다.
 - **시보광고**란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 **가상광고**란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 방송광고 편성기준

-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 방송사업자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 표기하여야 합니다.
-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총량

표 1-2. 광고총량 기준

구분	편성시간 당 총량	일 총량
지상파방송	최대 18/100	15/100 이하
유료방송	최대 20/100	17/100 이하

📍 중간광고

- 중간광고 노출 직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중간광고 시간은 1분 이내(필러 포함)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 방송프로그램 시간에 따른 중간광고 허용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3. 중간광고 기준

시간	45~60분	60~90분	90~120분	120~150분	150~180분	180분 이상
횟수	1회 이내	2회 이내	3회 이내	4회 이내	5회 이내	6회 이내

📍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가상광고 고지자막의 경우 화면의 1/16(6.25%) 이상의 크기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1/4(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방송프로그램 시간에 따른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4. 가상광고 기준

구분	지상파	유료방송
가상광고	5/100	7/100
유료방송	5/100	7/100

❖ 방송광고 편성에 대한 모니터링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편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편성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방송광고 편성에 대한 의견

- 방송광고 편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해당 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미디어인***에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mediin.or.kr/>

7) 협찬고지 기준

- '협찬'이란 방송프로그램 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에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에게 협찬을 제공하는 자를 '협찬주', 방송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을 제공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협찬고지'라고 합니다.

●● 협찬고지 허용범위

- 방송사업자는 TV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 방송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 제외)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의상·소품·정보 등을 협찬하는 경우
- 다만, 협찬고지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병원, 전문의약품, 조제분유, 17도 이상 주류 등)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협찬하는 경우

●● 협찬고지 일반기준

-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 협찬주 또는 관련 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문화예술행사·스포츠행사(중계 및 관련프로그램)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협찬고지 방법

● TV방송채널

표 1-5. TV방송채널 협찬고지 허용범위

구분	허용범위					
	시점	방법	내용	크기	시간	횟수
캠페인 협찬	캠페인 종료 시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 (단,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경우, 중간광고시간의 경우 예외)	자막, 음성	협찬주명 등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	고지자막 크기는 전체 화면의 1/4 초과 금지	1회 고지시간 45초 이내	1회
행사협찬	행사프로그램 종료 시	종료자막		고지자막 크기는 전체 화면의 1/4 초과 금지		1회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프로그램 종료 시	종료자막		고지자막 크기는 전체 화면의 1/4 초과 금지 (자막위치가 시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회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	예고종료 시	자막, 음성		고지자막 크기는 전체 화면의 1/4 초과 금지		매 시간당 3회 초과 금지
방송프로그램 내 시상품 등의 협찬고지	프로그램 종료 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 음성		고지자막 크기는 전체 화면의 1/4 초과 금지 (자막위치가 시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회
방송프로그램 내 장소 등의 협찬	프로그램 종료 시	종료자막		고지자막 크기는 전체 화면의 1/4 초과 금지 (자막위치가 시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회

● 라디오방송채널

표 1-6. 라디오방송채널 협찬고지 허용범위

구분	허용범위		
	시점	내용	횟수
캠페인 협찬	캠페인 시작과 종료 시	협찬주명 등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	
행사협찬	행사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중간, 종료 시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	시작과 종료 시		매 시간 당 4회 초과 금지
방송프로그램 내 시상품 등의 협찬고지	방송프로그램 해당 부분 소개 시	시상품명 및 협찬주명 등	
방송프로그램 내 장소 등의 협찬	방송프로그램 해당 부분 소개 시	협찬주명 등	

- 협찬고지는 협찬주명 등(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기업표어, 상표, 홈페이지 주소, 위치)에 맞게 노출하여야 합니다. 이미지(모델사진, 제품사진 등), 전화번호를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 협찬고지 내에 동영상이나 롤링효과를 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협찬고지 편성에 대한 의견

- 협찬고지 편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해당 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미디어인***에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mediin.or.kr/>

8) 방송내용 심의

- 방송은 공공의 자산인 주파수를 이용하며, 방송내용을 매개로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방송프로그램, 방송광고 등에서 어떤 방송내용을 전달할 것인가는 방송사업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에게 제공된 방송내용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규정, 방송광고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규정

- 「방송법」 제33조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을 제정 및 공표하여야 합니다. 심의규정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방송사업자는 이들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방송내용에 대한 자체심의

- **(방송프로그램 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 프로그램 제외)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방송광고 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 방송내용 사후심의

-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5월 출범한 민간독립기구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내용,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방송 후 또는 정보가 유통된 후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인지 방법은 시청자의 민원과 모니터요원의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시청하신 방송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시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상파TV 시청 안내

1) 지상파TV 직접수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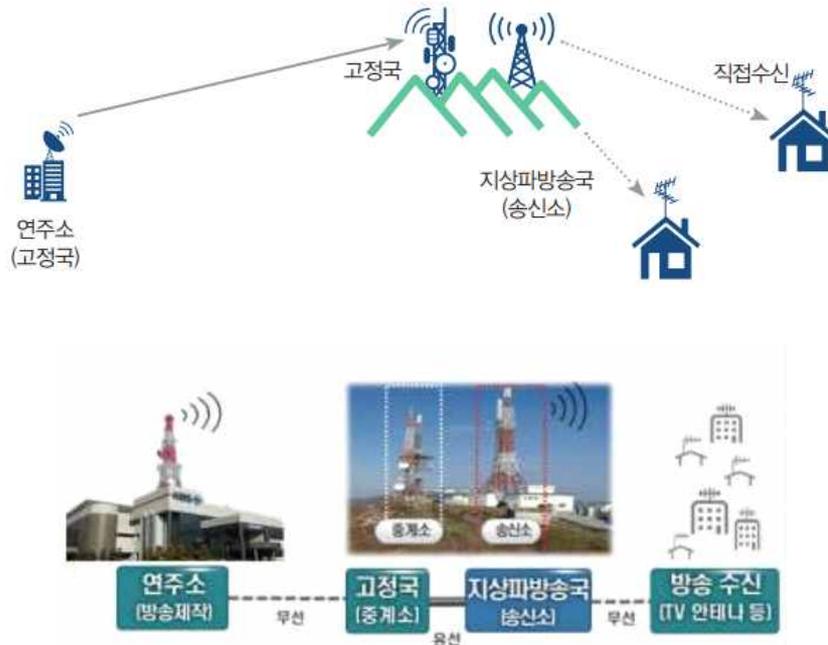
- 지상파방송이란 TV, 라디오 등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및 제작하고, 이를 지상의 무선국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파방송은 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데이터방송, 이동 멀티미디어방송(DMB)으로 구분됩니다.
- 우리나라 지상파TV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TV로 전환을 완료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31일에는 지상파UHD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지상파TV는 지상파 디지털TV와 지상파UHD방송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 여기서는 지상파TV(지상파 디지털TV, 지상파UHD방송) 직접수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상파방송 전송 구조

- 시청자에게 지상파방송(디지털TV, UHD방송, AM·FM라디오, DMB 등)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망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주소(지상파방송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송신소·중계소를 거쳐 시청자에게 직접 전송됩니다.
 - 전국 방송을 위하여 연주소(중앙 지상파방송국)는 다른 연주소(지역 지상파방송국)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합니다. 연주소(지역 지상파방송국)가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지역 송신소·중계소를 거쳐 시청자에게 직접 전송됩니다.
 - 도서·산간 등 난시청 지역에는 방송보조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송보조국은 연주소(지상파 방송국)로부터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을 증폭시켜 시청자에게 직접 전송합니다.
- 우리나라는 지상파 디지털TV 전송기술 표준으로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8레벨

잔류 측파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파UHD방송 전송기술 표준으로 ATSC 3.0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2-1. 지상파방송 통신망 구성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20). 「무선국 업무 및 종류 해설서(개정판)」, 16쪽.

지상파TV 직접수신

○ 지상파TV 직접수신이란 안테나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 디지털TV, 지상파UHD TV를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청자가 직접수신 방식으로 지상파 디지털TV, 지상파UHD방송을 수신하는 경우 무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상파UHD방송을 시청하려면 UHD TV수상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UHD TV수상기는 미국식 ATSC 3.0 전송기술을 지원해야 합니다.

○ 이 외에 지상파TV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료방송사(SO, 위성방송, IPTV)를 통해 지상파 디지털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청자는 유료방송사의 방송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이용요금이 발생합니다.

※ 현재 유료방송사는 지상파UHD방송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료방송사의 방송 상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지상파UHD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지상파UHD방송을 시청하시려면 직접수신 방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지상파TV방송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해당 지상파 TV방송사의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용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상파TV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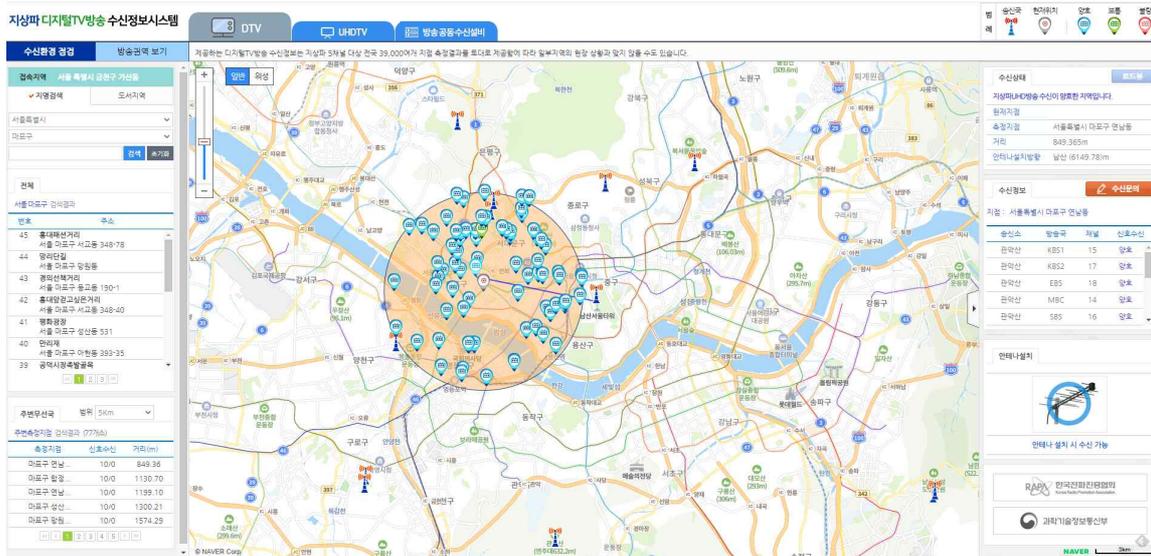
❖ 지상파TV 직접수신 방법 (1)안테나

o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청자가 지상파 디지털TV, 지상파UHD TV를 직접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다만, 안테나 구매에 앞서 시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상파TV 수신강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상파UHD방송 제공을 위한 통신망 구축은 1단계 수도권, 2단계 광역시권·강원권(평창올림픽 개최지 일원)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단계 전국 사군 지역(2021~2023)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UHD TV를 시청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수신가능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2-2. 지상파TV 수신강도 확인방법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수신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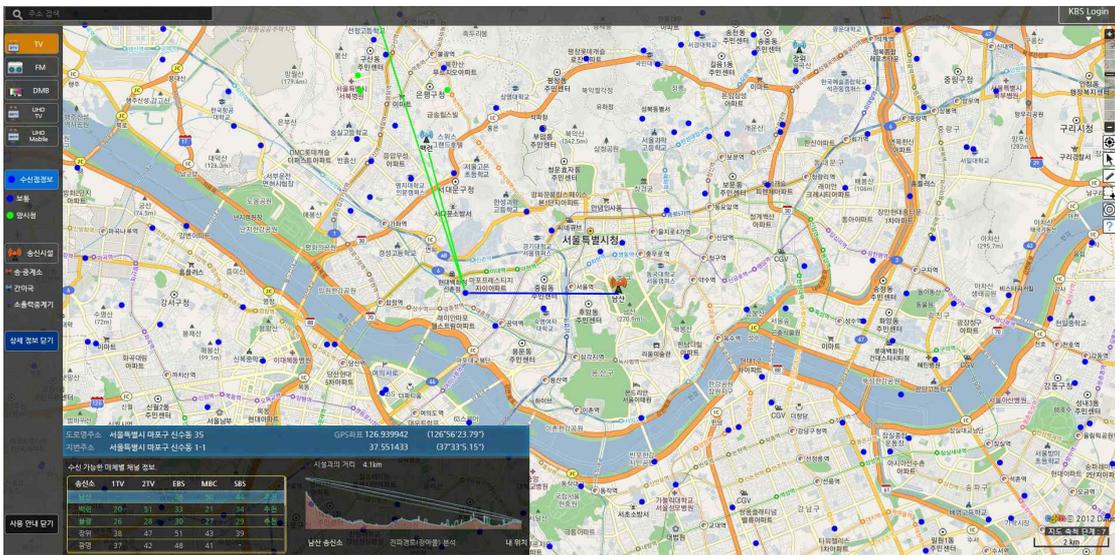


* http://map.digitaltv.or.kr/DigitalTV/main_2018.jsp?tvDiv=DTV

- ① <디지털마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수신정보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 ② 왼쪽 상단에서는 수신환경 점검 메뉴를, 오른쪽 상단에서는 수신 강도를 확인하고 싶은 서비스(DTV, UHD TV,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선택합니다.

- ③ 왼편 상단 지명검색 란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시/도, 시/군/구)과 주택명 등을 입력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 ④ 검색 결과, 오른편 지도 위에는 거주하고 계신 주택 위치(측정지점)와 송신소 위치를 연결하는 선(파란색 또는 붉은색)이 나타납니다. 파란색 선은 수신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 송신소 위치를 기억해 두셨다가, 추후 안테나를 설치할 때 송신소가 위치한 방향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안내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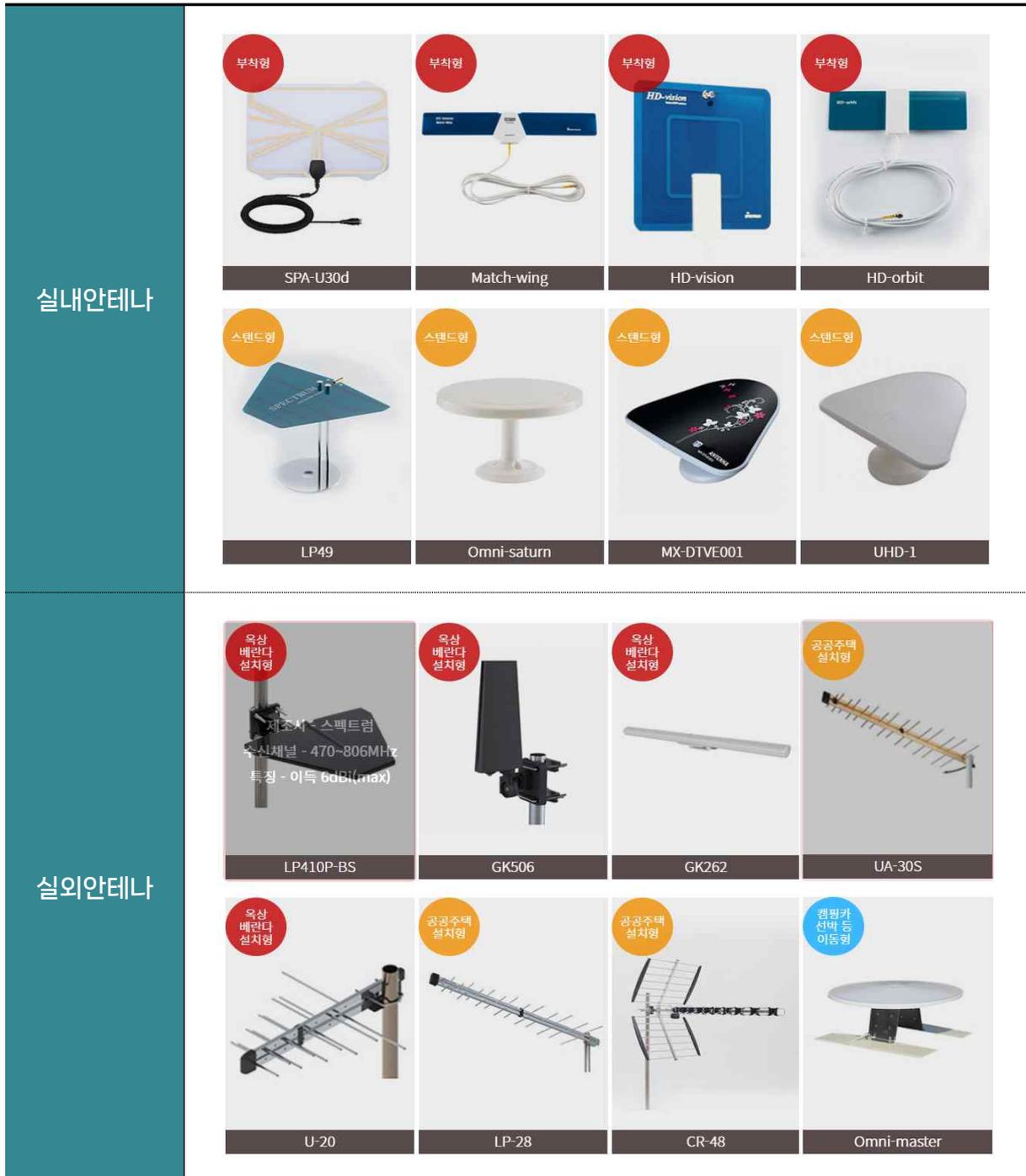
* <https://map.kbs.co.kr/map.jsp>

- ① <KBS 수신안내지도>에 방문하여, 왼편 상단 빈 칸에 지역 명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오른편 지도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 ② 왼편에서 수신강도를 확인하고 싶은 서비스(TV, FM, DMB, UHD TV, UHD Mobile)를 선택합니다.
- ③ 오른편 지도에는 파란색 점(수신점)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과 인접한 파란색 점(수신점)을 선택합니다.
- ④ 그러면, 오른편 지도 위에 송신소와 수신점을 연결하는 여러 개의 선이 나타납니다.
- ⑤ 왼편 하단 '상세정보 보기'를 누르면 송신소 목록, 매체명, 채널번호, 추천여부 등이 나타납니다.
- ⑥ 송신소 목록에서 특정 송신소를 선택하면, 해당 송신소와 수신점의 연결선(파란색), 전파 경로(장애물) 분석, 위치정보 등이 나타납니다.
- ※ 상세정보 보기의 송신소 목록에서 추천(녹색) 글자가 있는 송신소 위치를 기억해 두셨다가, 추후 안테나를 설치할 때 송신소가 위치한 방향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o 수신강도를 확인하신 후에는 안테나를 구입합니다.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디지털TV 안테나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안테나, 실외 안테나 종류(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2-3. 안테나 종류 예시



※ 출처: <http://uhdkorea.org>

- 수신강도, 안테나 설치위치, 안테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시청자에게 가장 적합한 안테나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강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 실외 안테나 설치를 권장합니다.
- ※ 이미 UHF 안테나로 지상파 디지털TV를 수신하고 계신 시청자 중 지상파UHD방송이 수신되지 않을 경우,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UHF 안테나가 협대역(470~620MHz)인 경우 700MHz 대역을 수신할 수 있는 광대역 UHF 안테나(470~806MHz)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안테나를 구입하신 후에는 실내, 실외 등 적절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 시중에서 판매하는 실내 안테나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TV 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변 건물이나 지형, 집안 구조 등에 따라 수신강도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어 최적의 위치를 찾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내 안테나는 4층 이상에서 최대한 송신소 방향으로 창가에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림 2-4. 안테나 설치 예시



※ 출처: <http://uhdkorea.org>

안테나 설치 지원

-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 무상 설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상 설치를 희망하시는 경우 국번 없이 124번(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digitaltv.or.kr/ft/di/an/list.do>

❖❖ 지상파TV 직접수신 방법 (2)방송 공동수신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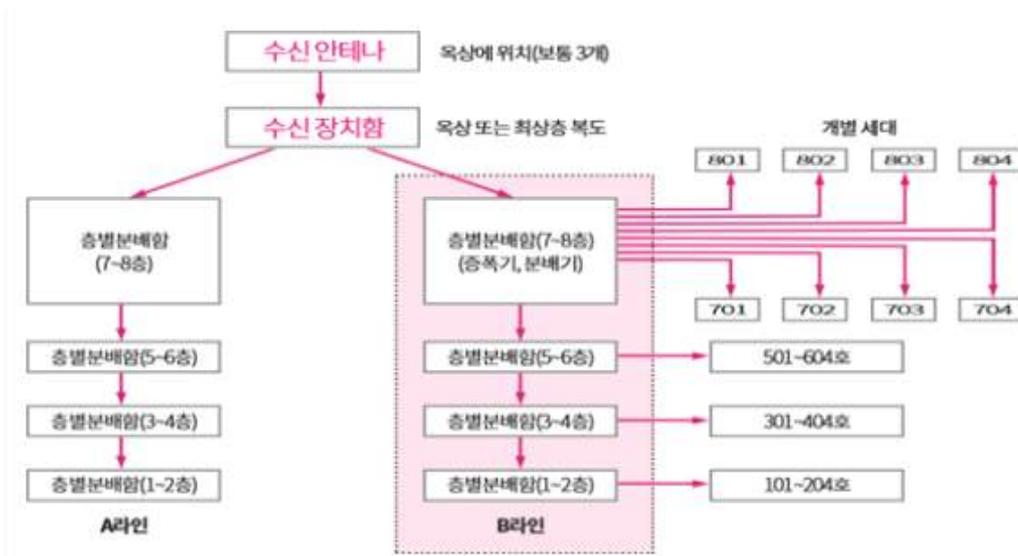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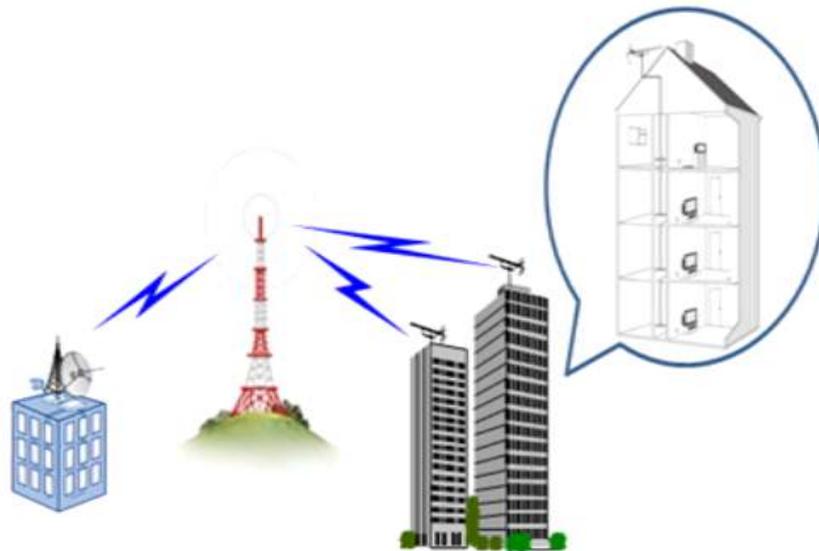
-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합니다. 여기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TV, FM라디오 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위성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방송 공동수신설비는 각 동마다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개별 동' 방식과, 하나의 안테나로 수신한 신호를 헤드엔드(Head End) 설비로 변환 및 증폭하여 각 세대로 분배하는 '중앙 수신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청자의 경우, 방송 공동수신 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습니다.
 - 헤드엔드 시스템이 없는 '개별 동 수신방식'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시청자는 벽면 단자와 수상기를 연결하여 지상파 디지털TV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각 동에 광대역(470~806Mhz) UHF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면 벽면 단자와 수상기를 연결하여 지상파 UHD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습니다.
 - 헤드엔드 시스템이 있는 '중앙 수신방식'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시청자는 벽면 단자와 수상기를 연결하여 지상파 디지털TV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공동주택에 광대역(470~806Mhz) UHF 안테나, 광대역 구내 전송 증폭기, 방송채널별 번복조형

UHD 신호처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벽면 단자와 수상기를 연결하여 지상파UHD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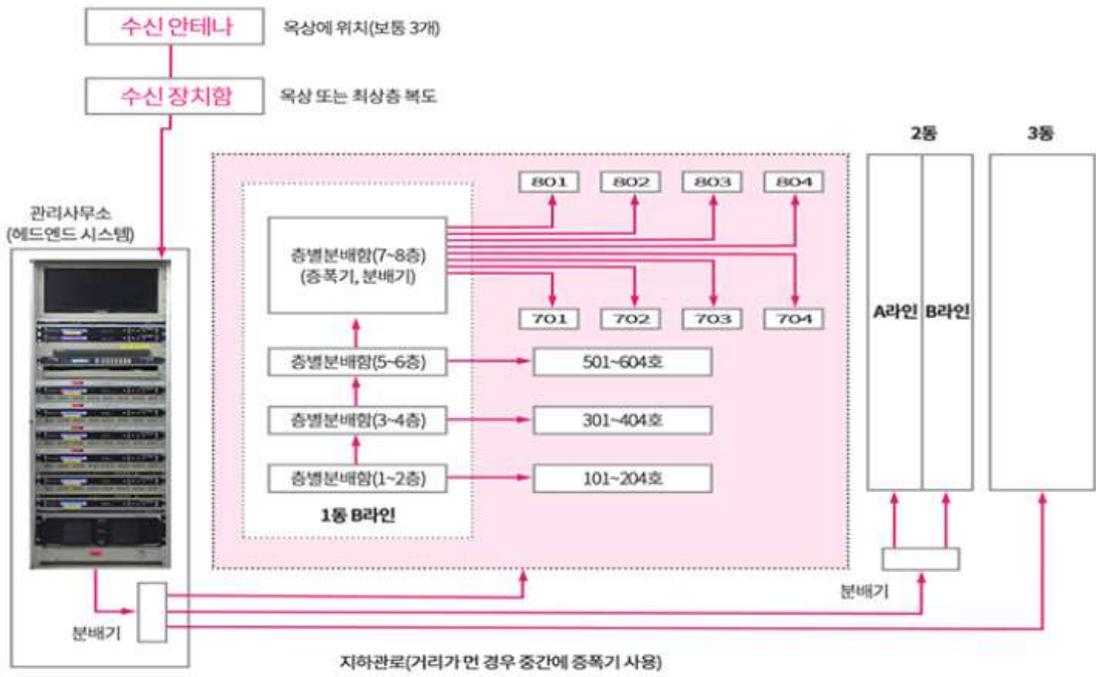
- 방송 공동수신설비가 없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개별적으로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를 설치하시거나, 관리기관과 각 세대가 협의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 2-5. 방송공동수신설비

개별 동 수신방식 공동수신설비



중앙 수신방식 공동수신설비



※ 출처: <http://www.digitaltv.or.kr/ft/me/me06/list.do>

❖ 지상파TV 채널 검색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청자의 경우 안테나를 설치 한 후 안테나 '단자' 부분을 TV 뒷면 '안테나 입력'에 연결합니다.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청자의 경우 '벽면 단자' 부분을 TV 뒷면 '안테나 입력'에 연결합니다.
- 단자와 TV를 연결한 후에는, TV 전원을 켜고 리모컨의 '메뉴' 또는 '설정' 버튼을 누른 후 '채널'을 눌러 '자동채널설정'을 시작합니다.
 - 자동채널설정이 시작되면 TV가 자동으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채널번호를 저장합니다.
- 자동채널설정이 종료되면, 리모컨을 이용하여 지상파 디지털TV, 지상파UHD TV 채널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 TV에서 자동채널설정을 하였으나 방송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안테나 위치를 조정해 보거나 해당 건물 방송 공동수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증폭기함에서 각 세대로 분배하는 연결단자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2-6. 지상파TV 채널 검색 방법



2) 지상파UHD방송 시청 안내

UHD방송 개념

- o UHD(Ultra High Definition)방송이란 HD(High Definition)방송에 비해 더욱 선명하고 입체적인 음향을 제공하는 초고화질 실감형 방송을 말합니다.
- 화질은 해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상도는 화소(pixel)가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해상도는 디지털시네마표준에 따라 2K·4K·8K로 표기되거나, 일반 전자기기 해상도 분류기준에 따라 SD·HD·FHD·QHD·UHD 등으로 표기됩니다.

표 2-1. 해상도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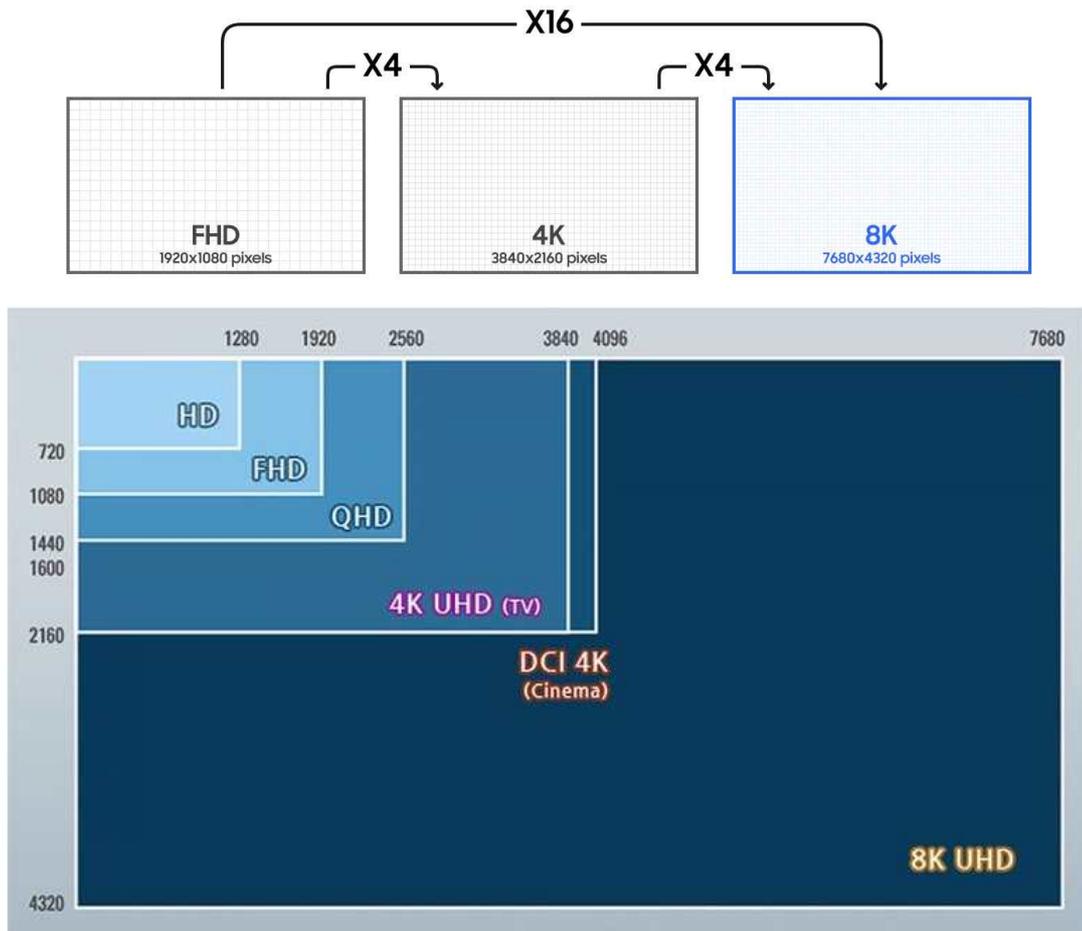
해상도 종류	가로화소	세로화소	가로화소×세로화소	비고
가상광고	5/100		7/100	
2K(디지털시네마표준)	2,048	1,080	2,211,840	
4K(디지털시네마표준)	4,096	2,160	8,847,360	
8K(디지털시네마표준)	8,192	4,320	35,389,440	
SD(Standard Definition)	720	480	345,600	
HD(High Definition)	1,280	720	921,600	
FHD(Full High Definition)	1,920	1,080	2,073,600	≒1K
QHD(Quad High Definition)	2,560	1,440	3,686,400	≒2K
4K UHD(Ultra High Definition)	3,840	2,160	8,294,400	≒4K
8K UHD(Ultra High Definition)	7,680	4,320	33,177,600	≒8K

* 디지털시네마표준에서 2K, 4K, 8K는 가로화소 수가 약 2,000개, 4,000개, 8,000개라는 것을 의미함

* 반면, 일반 전자기기 해상도는 세로화소 수를 기준으로 표기함. 예를 들어 4K UHD는 2160p, 8K UHD는 4320i임. 여기서 p는 순차주사방식(progressive scanning)을 말함. p방식은 완전한 화면정보가 담긴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주사하므로 화면 떨림이 적으나 주파수 효율성이 낮음. i는 비월주사방식(interlaced scanning)을 지칭함. i방식은 화면의 주사선을 하나씩 건너뛰며 주사하는 방식으로 화면의 깜빡임이 발생하고 선명도가 낮지만 주파수 효율성이 높음.

- 시청자는 통상 TV, 모니터 같은 일반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 '해상도'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전자기기에는 SD·HD·FHD·QHD·UHD와 같은 해상도 분류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림 2-7. 해상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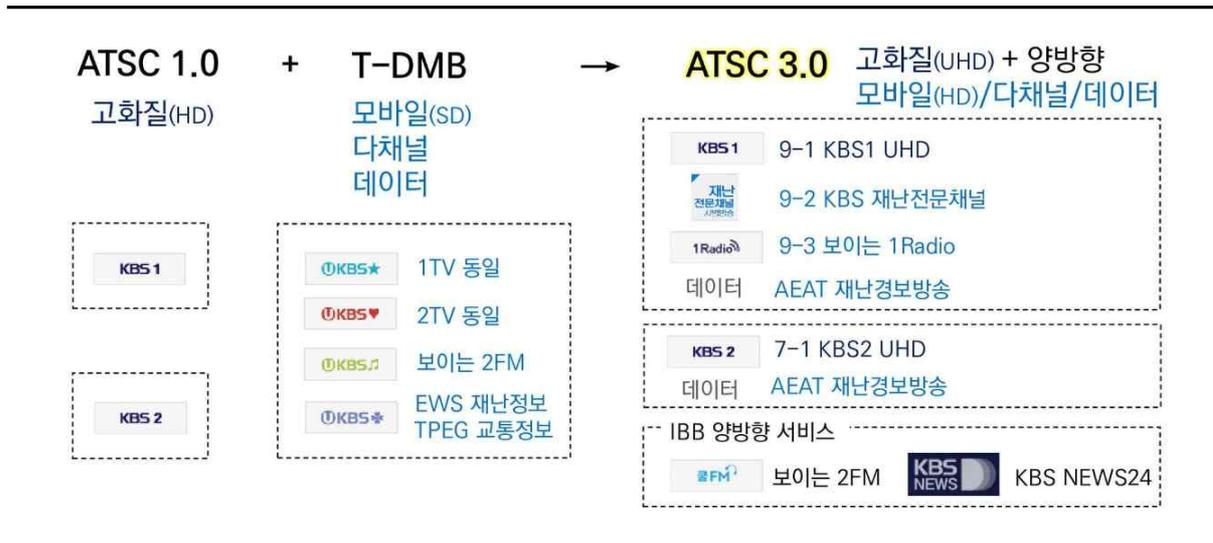


- UHD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UHD TV수상기가 필요합니다.
 - 최근 가전사가 판매하고 있는 TV수상기는 대부분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는 TV수상기를 구매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UHD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상파UHD방송

- 지상파UHD방송은 지상파방송사가 제공하는 UHD방송을 말합니다. 지상파UHD방송은 ATSC 3.0을 전송기술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TSC 3.0을 기반으로 지상파UHD방송은 고화질방송, 다채널방송, 이동형 서비스, 인터넷 기반 양방향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림 2-8. 지상파UHD방송 서비스 구성사례(KBS)



※ 출처: KBS(2022.3). 「KBS UHD 혁신서비스(다채널/모바일/양방향) 추진경과」.

o 지상파UHD방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 2-9. 지상파UHD방송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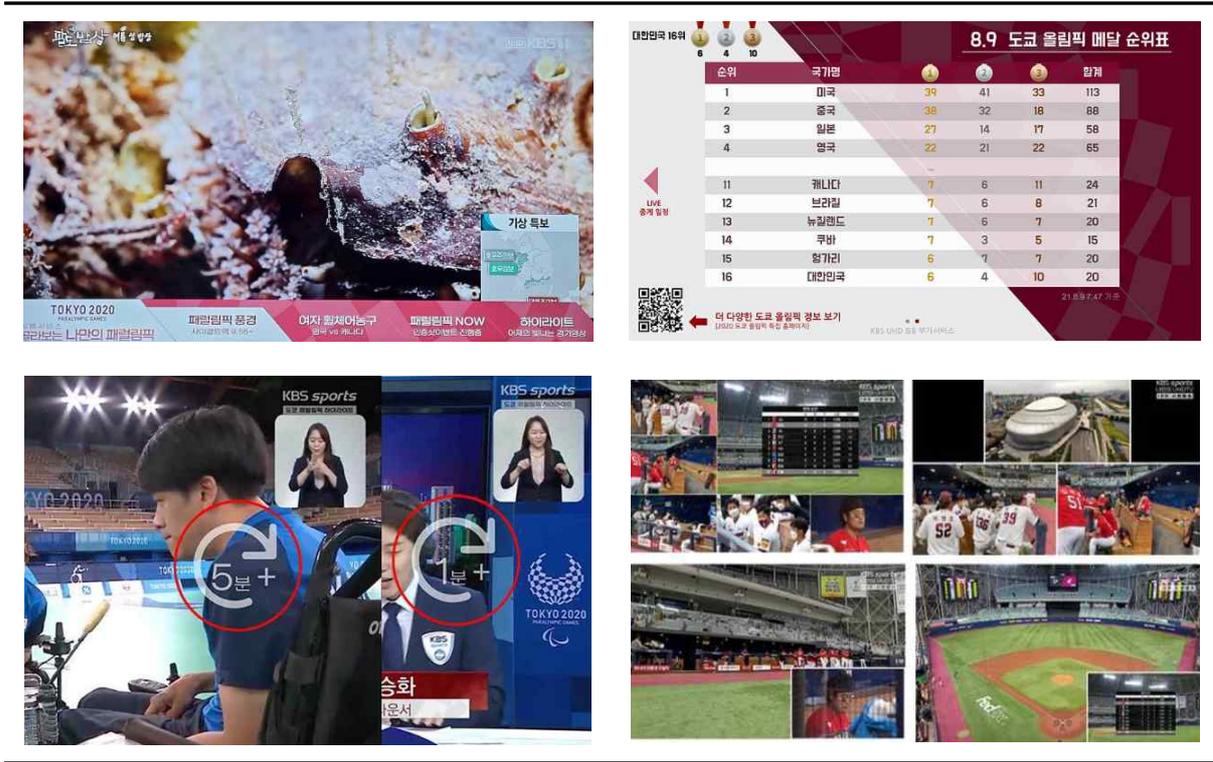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12).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HD 대비 4배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 다채널방송(Multi Mode Service)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채널방송이란 지상파방송사가 이미 허가받은 1개의 TV방송 주파수 대역(6MHz) 내에서 2개 이상의 채널을 송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정형 UHD방송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 내에서 이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 서비스란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TV, 라디오, 데이터방송 등을 송신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 IBB(Integrated Broadcast Broadban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BB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말합니다. 방송프로그램 관련 정보, 재난정보, 멀티CAM 화면, 다시보기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지상파방송 3사는 2017년 11월부터 지상파UHD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결합된 양방향 서비스(TIVIVA)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 2-10. 지상파UHD방송 IBB서비스 사례



※ 출처: <http://tech.kobeta.com>

❖ 지상파UHD방송 추진현황

- o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는 지상파UHD방송 본방송을 개시하고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방송사는 2017년 5월 31일 수도권·광역시·강릉·평창지역 UHD 방송국 허가를 통해 본방송을 개시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방송사는 수도권·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UHD 방송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표 2-2. 지상파UHD방송 도입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구분	지역	방송사	
1단계 (2017년 5월 31일)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MBC, SBS ※ EBS UHD방송은 방송 일정 미확정 	
2단계 (2017년 12월)	광역시관· 강원권 (평창올림픽 개최지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KBS, 부산MBC, KNN • 광주KBS, 광주MBC, 광주방송(KBC) • 대구KBS, 대구MBC, 대구방송(TBC) • 대전KBS, 대전MBC, 대전방송(TJB) • 울산KBS, 울산MBC, 울산방송(UBC) • MBC강원영동(강릉), 원주MBC-평창·횡성군 일원, G1(강원 민방)-강릉·평창 일원 	
3단계 (2021년~2023년)	전국 사군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KBS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KBS, 전주MBC, 전주방송(JTV) • 청주KBS, 청주방송(CJB) • 춘천KBS, 춘천MBC, 강원민방(G1) • 창원KBS, MBC경남, 원주MBC-원주시 일원 • 제주MBC, 제주방송(JIBS)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KBS, MBC강원영동(삼척), 원주KBS • 순천KBS, 여수MBC, 목포KBS, 목포MBC • 안동KBS, 안동MBC, 포항KBS, 포항MBC, 진주KBS • 충주KBS, MBC충북 • OBS경인TV

※ 「KBS경인」은 2027년(UHD 전환검토) 이후 망 구축 추진, 지역국방송사 기능 조정 시 관련 경과를 반영하여 망 구축 일정 조정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12).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UHD방송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하여 UHD 콘텐츠 최소 편성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 지상파방송사는 UHD 기술을 기반으로 다채널방송, 이동형 서비스, 방송통신 융합기술 (데이터 다운로드, 맞춤형 광고방송 등), 8K UHD방송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 2-2. UHD 콘텐츠 최소편성비율

구분	'20년~'22년	'23년	'24년	'24년~'26년	'27년 이후
KBS·MBC본사, SBS	20%	25%	35%	50%	'23년 결정
지역방송국(사)	20%		30%	45%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12).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지상파UHD방송 수신방법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상파UHD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지상파UHD방송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광역시권·강원권(평창올림픽 개최지 일원), 전국 시군(일부 제외)에서 지상파UHD방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지상파UHD방송 수신이 가능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지상파 디지털TV를 안테나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별도의 안테나 구입과 설치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대역(470~620MHz)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700MHz 대역을 수신할 수 있는 광대역 UHF 안테나(470~806MHz)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보유하고 계신 UHD TV가 지상파U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하려면 UHD방송표준(ATSC 3.0) 칩이 내장되어 있는 UHD TV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7년 2월 이전에 구매한 UHD TV는 유럽식 전송방식(DVB-T2)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제품일 경우, 별도 셋톱박스를 구매하여 설치하면 지상파UHD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의 UHD TV일 경우 인터넷에서 '지상파UHD 수신박스'를 구매하여 연결하면 지상파UHD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안테나와 UHD TV수상기를 연결한 후 자동채널설정을 실행하여 지상파UHD방송 수신검색을 실행합니다.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UHD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광대역(470~806Mhz) UHF 안테나, 광대역 구내 전송 증폭기, 방송채널별 변복조형 UHD 신호처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청자는 벽면 단자와 수상기를 연결하여 지상파UHD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습니다.

3)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멀티미디어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은 이동 중 수신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방송서비스입니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TV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합니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T-DMB)은 2005년 12월 본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현황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KBS, MBC(지역MBC), 지역민방(SBS 등), YTN, QBS 등이 TV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2-2.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채널운용 현황

방송구역	주 사업자	서비스명	텔레비전 채널	라디오 채널	데이터 채널
전국	한국방송공사	U-KBS	U-KBS STAR, HD U-KBS STAR, U-KBS HEART	U-KBS MUSIC	U-KBS CLOVER
	(주)문화방송	MBC DMB	my MBC, HD my MBC	MBC RADIO	DMB Drive
	(주)SBS	SBS U	SBS u TV, HD SBS u TV	SBS V-Radio, Arirang Radio	
	(주)YTN DMB	YTN DMB	mYTN, HD mYTN, LOTTE Homeshop		DTS
강원권	한국DMB(주)	QBS	QBS YonhapTV, HD QBS Yonhap TV, CJ ONSTYLE, HD CJ ONSTYLE		
	춘천문화방송(주)	MY MBC	MY MBC, HD CJ ONSTYLE		DMB Drive
대전, 충청권	(주)G1방송	G1방송 DMB	Hi G1(SBS U), Go G1(mYTN)		DTS
	대전문화방송(주)	MY MBC	MY MBC11, CJ ONSTYLE		DMB Drive
광주, 전남, 전북권	(주)대전방송	TJB u	TJB-SBSu, CJB-mYTN		DTS
	광주문화방송(주)	Honam MBC	my MBC TV, CJ ONSTYLE		DMB Drive
대구, 경북권	(주)광주방송	kbc	kbc-SBSu, JTV-mYTN		DTS
	안동문화방송(주)	MY MBC	my MBC, CJ ON STYLE		DMB Drive
부산, 울산, 경남권	(주)TBC	TBC DMB	TBCu, mYTN		DTS
	부산문화방송(주)	Busan MBC	my MBC TV, CJ ONSTYLE		DMB Drive
제주권	(주)KNN	KNN DMB	KNNu, ubc u		DTS
	제주문화방송(주)	Jeju MBC	my MBC, CJ ON STYLE		DMB Drive
	(주)제주방송	JIBS	DMB1(JIBS), DMB2(JIBS+mYTN)		DTS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채널편성 규정

- 「방송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TV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데이터방송채널 중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 「방송법」 제7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3개(데이터방송 채널이 포함되는 경우 4개)를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시청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단말기와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언제든지 무료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상파TV방송 재송신

❖ 지상파TV방송 동시재송신

- 「방송법」 제78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KBS, EBS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 제외)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유료방송사는 KBS1TV, EBS를 의무적으로 동시재송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상파TV방송에 대해서는 동시재송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와 동시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고 KBS2TV, MBC, SBS 등 지상파TV방송 채널을 재송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료방송사가 이들 지상파 TV방송 채널 재송신이 가입자 확보와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지상파TV방송 동시재송신 중단

- 통상 유료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간 동시재송신 계약은 만료 전에 갱신됩니다. 그러나 동시 재송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료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간 동시재송신 대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KBS1TV, EBS를 제외한 다른 지상파TV방송 채널의 재송신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1조의7에 의거 30일 이내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지상파TV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상파TV방송 동시재송신 중단 시 대처

- 지상파TV방송(KBS1TV, EBS 제외) 재송신이 중단되었을 경우, 시청자는 직접수신 방식으로 지상파TV방송을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시청자는 안테나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TV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직접수신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2)지상파TV 직접 수신(1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지상파 라디오방송 청취 안내

1) 라디오방송

- 라디오방송은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라디오방송은 1927년 처음 도입된 이래 커다란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최근 라디오방송은 지역성 구현과 함께 재난방송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라디오방송 전송방식에는 AM(Amplitude Modulation)과 FM(Frequency Modulation)이 있습니다.
 - AM은 전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신호파의 크기에 비례하여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AM 라디오방송은 전파의 회절성이 우수하고, 먼 곳에서도 수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잡음의 개입이 쉬워 음질이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FM은 전파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정한 진폭에서 신호파의 크기에 비례하여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FM 라디오방송은 잡음의 개입이 적어 음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파의 회절성이 약하여 터널, 건물 내부, 산 등 물리적 장벽을 만나면 수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라디오방송 현황

- 우리나라에는 70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250개 라디오방송국(AM 50개, FM 200개)가 있습니다.

표 3-1. 라디오방송 현황

구분		방송국	
		AM	FM
합계		50	200
지상파3사(KBS)		22	49
지상파3사(MBC)		1	2
지역MBC(16개사)		19	38
지상파3사(SBS)		1	2
지역민방(10개사)		-	11
교육(EBS)		-	1
보도전문(YTN라디오)		-	1
종교중심	CBS	5	18
	불교	-	8
	원음	-	5
	가톨릭평화	-	5
	극동	2	13
교통·기상 중심	TBS	-	2
	TBN	-	11
음악 중심(경인)		-	1
전통문화 중심(국악)		-	3
외국어	부산영어	-	1
	광주영어	-	1
	아리랑	-	1
공동체라디오(27개사)		-	27

※ 출처: 지상파라디오진흥자문위원회(2020.7.) 「라디오방송 진흥을 위한 정책건의서」, 9쪽. 재구성(지역민방에 OBS경인FM 1개, 공동체라디오 20개 추가)

❖❖ 방송분야와 라디오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편성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는 방송프로그램 분류를 '방송분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유형을 '보도', '교양', '오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종합편성', 특정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전문편성'이라고 합니다.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은 방송사업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이하)에 따라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시~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시~11시)에는 특정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전문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해당채널의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이상)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 「방송법」 제11조와 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라디오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 라디오방송프로그램 청취

-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은 방송구역 내에서 라디오수신기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라디오방송사업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시간 또는 다시듣기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동체라디오

- 공동체라디오는 시·군·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FM 주파수 대역(88~108MHz)에서 10W 이하 소출력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라디오방송을 말합니다. 공동체라디오는 비영리 법인이 주체가 되어 기부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방송광고수익금, 협찬고지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민이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방송매체입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 소식, 문화, 음악 등 지역정보에 관한 프로그램,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재난 정보에 관한 프로그램 등(단,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제외)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공통체라디오 현황

- 공동체라디오는 2005년 최초 시범방송 이후 2009년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신규 허가를 받아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1년에는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신규 허가되었습니다.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현황(27개사)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2. 공동체라디오방송 현황

구분	법인명	방송구역	주파수(MHz)
관악FM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서울 관악구 일부	100.3
마포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일부	100.7
성남FM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 일부	90.7
금강FM	(사)금강에프엠방송	충남 공주시 일부	104.9
성서공동체FM	(사)성서공동체에프엠	대구 달서구 일부	89.1
영주FM	(사)영주에프엠방송	경북 영주시 일부	89.1
광주시민방송	(사)광주시민방송	광주 북구 일부	88.9
서대문FM	(사)서대문마을공동체라디오	서울 서대문구 일부	91.3
연수공동체FM	연수공동체FM	인천 연수구 일부	98.7
인천FM	(재)인천FM방송	인천 서구 일부	98.5
대전생활문화방송	(사)대전생활문화방송	대전 서구 일부	93.7
세종FM	(사)세종공동체라디오방송	세종 일부	98.9

대구동구FM	와글사회적협동조합	대구 동구 일부	104.5
연제FM	연제공동체라디오	부산 연제구 일원	106.3
GBS고려방송	(사)고려인마을	광주 광산구 일부	93.5
수원FM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수원 팔달구 일원	96.3
화성FM	화성에프엠공동체라디오	경기 화성시	98.7
GO구리FM	(사)GO구리FM	경기 구리시 일부	105.7
단원FM	(사)안산공동체라디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부	88.7
영월FM공동체라디오	(사)영월FM공동체라디오	강원 영월군 일부	99.1
공동체라디오태백FM	공동체라디오태백FM	강원 태백시 일부	100.5
옥천FM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충북 옥천군 일부	104.9
한국문화나눔사회적협동조합	한국문화나눔사회적협동조합	경북 상주시 일부	93.9
성주FM	풀뿌리미디어	경북 성주군 일부	92.7
남해FM	(사)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	경남 남해군 일부	91.9
전주공동체라디오	(사)전주공동체라디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원	93.5
순천미디어네트워크	(사)순천미디어네트워크	전남 순천시 일부	92.5



❖❖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 「방송법」 제69조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의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합니다.

❖❖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 공동체라디오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공동체라디오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동체라디오 청취

- 공동체라디오는 방송구역 내에서 라디오수신기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시간 또는 다시듣기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4. 유료방송 시청 안내

1) 이용약관

-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다수의 시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방송서비스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을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와 승인

- 이용약관 신고
 -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 이용약관 승인
 - 이용약관에서 정한 최소채널상품(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 이용요금, 결합상품(유료방송 상품과 통신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 이용요금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동일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소채널상품 이용요금, 결합상품 이용요금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용약관 변경통지

-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용약관 변경 또는 재통지 명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이용약관 변경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 내용

- 이용약관에는 이용요금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와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 이용약관에는 상품별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에 대한 의견

- 시청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유료방송사업자는 가입·변경·재약정 시 회사명, 가입일, 가입상품,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설명을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문자로도 고지하고 있습니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은 유료방송사업자와 시청자가 체결하는 계약내용의 기초가 됩니다. 시청자는 유료방송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용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업자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미디어인***에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mediin.or.kr/>

2) 채널구성과 운용

- 유료방송사업자는 통상 1년 단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방송채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공급받은 다수의 채널을 방송상품으로 구성하여 시청자(이용자)에게 판매합니다. 이때 채널구성과 운용은 해당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방송법」 제78조, 제70조는 채널구성과 운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채널구성과 운용

- **(동시재송신)** 유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KBS1TV, EBS)을 동시재송신 하여야 합니다.
- **(최소채널 수)** 채널구성이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전체운용 TV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도채널 의무편성)** 유료방송사업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의무편성)** 유료방송사업자는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공공채널)을 3개 이상', '종교의 선교목적에 지닌 채널(종교채널)을 3개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장애인복지채널)을 1개 이상'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채널 의무편성)** 방송 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공익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 방송분야(사회복지 분야, 과학·문화 진흥 분야, 교육 및 지역 분야)에 대하여 공익채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료방송사업자는 3개 방송분야별 1개 이상, 총 3개 이상의 공익채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지역채널 의무편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은 금지됩니다.

- **(직접사용채널 수 제한)** 「방송법」은 직접사용채널 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사용채널이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방송채널을 말합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지역채널 제외)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전체 운용채널 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TV방송채널 수 또는 라디오방송채널 수의 각각 100분의 10,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운용하는 TV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 각각 1개 채널,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 각각 4개 채널,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 1개 채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특수관계자 임대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에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란 해당 사업자와 경영상 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운용하는 TV방송채널 수의 100분의 20(5개 미만인 경우 1개 채널)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 채널구성과 운용에 대한 의견

- 유료방송 가입 시 시청자는 방송 상품의 종류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입하려는 방송 상품에 어떤 방송채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당시 안내받은 방송채널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채널이 상이할 경우, 해당 유료방송 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채널구성과 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미디인***에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mediin.or.kr/>

3) 방송 상품 이용

- 방송 상품이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와 맺은 개별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말합니다.
- 결합상품이란 유료방송 상품과 통신상품(모바일, 인터넷 등)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가 판매하는 방송 상품(IPTV)의 경우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방송 상품(IPTV)을 시청하려는 경우 통신상품(인터넷)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결합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시청자는 요금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청자는 방송 상품이나 통신상품을 각각 구매하기보다는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방송 상품 구조

- 방송 상품은 기본상품(TV방송채널+주문형 비디오), 기본 상품과 선택 상품(기본 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TV방송채널, PPV, PPM, PPS, PPC 등)을 묶은 조합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PPV(Pay Per View)는 콘텐츠 이용 건별로 요금이 부과되는 주문형 비디오 상품을 말합니다.
 - PPM(Pay Per Month)는 콘텐츠 이용요금이 월 단위로 부과되는 주문형 비디오 상품을 말합니다.
 - PPS(Pay Per Series)는 드라마 등 일련의 시리즈물 단위로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주문형 비디오 상품을 말합니다.
 - PPC(Pay Per Channel)는 특정 채널에 대한 이용요금이 월 단위로 부과되는 유료채널 상품을 말합니다.
- 기본 상품, 조합 상품에 부여하는 명칭은 유료방송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세부사항은 유료방송사업자 홈페이지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상품 요금

- 방송요금은 시청자가 가입한 방송 상품에 따른 이용요금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다회선(복수단말) 이용요금이 발생합니다.
- 단말장치 임대료(장비임대료)가 있습니다. 방송 상품을 이용하려면 단말장치(셋톱박스, 스마트 카드, 리모컨, 모뎀 등)가 필요합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자사가 보유한 단말장치를 시청자에게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를 청구합니다.
- 설치비(엔지니어 출동비)가 있습니다. 설치비는 신규설치, 이전설치, 변경설치 등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소요되는 일회성 비용입니다.

❖ 할인

- 이용요금 할인은 약정할인과 결합할인으로 나뉩니다. 약정할인은 방송 상품을 일정기간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제공받는 할인입니다. 결합할인은 방송 상품과 통신상품을 묶은 결합상품 이용으로 제공받는 할인입니다. 약정기간은 통상 3년 이내이며 약정기간이 길수록 할인이 커집니다.
- 약정기간이 만료된 시청자가 재약정 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재약정 할인을 제공합니다.
- 약정을 하거나 상위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는 단말장치 임대료(장비임대료)에 대하여 할인을 제공합니다. 다회선(복수단말) 이용 시 단말장치 임대료 일부를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 유료방송사업자는 복지용 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심신장애자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만65세 이상 가구주, 다자녀 가구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시청자는 증빙서류 확인절차를 거쳐 기본 상품 이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유료방송사업자는 신규가입 시청자에게 설치비(엔지니어 출동비)를 면제한다거나, 가입자의 연령·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치비 할인을 제공한다거나, 특정 카드로 요금을 납부할 경우 할인을 제공한다거나, 각종 이벤트(신규가입, 재가입, 각종 기획전 등)를 통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할인반환금

- 할인은 시청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의 이행을 전제로 제공됩니다.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할인 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할인반환금 산정식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상품 등에 대한 의견

- 방송 상품 종류, 이용요금, 할인, 할인반환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해당 유료 방송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하시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미디어인***에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mediin.or.kr/>

4)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상품(기본상품, 조합상품)에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가서비스는 시청자가 TV화면 메뉴를 통해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서비스 유형

- 부가서비스에는 노래방, 게임, 키즈, 교육, TV미술관, 운세, 음악, 생활, 편의, 기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유형은 서로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료방송사업자 홈페이지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서비스 요금

- 부가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용 건당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월정액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 서비스의 경우 노래반주, 노래강좌 등의 콘텐츠 요금을 이용 건당 또는 월정액으로 부과합니다.
- 요금 부과방식과 요금수준은 부가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유료방송사업자 홈페이지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서비스에 대한 의견

-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업자 고객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하여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미디어인***에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mediin.or.kr/>

5) 요금납부

-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 상품 또는 결합상품에 가입한 시청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금납부 방법에는 통상 지로납부(자동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타 요금과의 합산 납부 등이 있습니다. 방송 상품 가입 시 유료방송사업자는 요금납부 방법을 시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시청자는 어떤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명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 변경, 상품의 가입·해지·일시 중단, 요금 납부방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청자는 이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용요금, 요금납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확인

- 요금납부는 후불제가 원칙입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납부일 전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시청자는 청구된 요금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방송상품 이용요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단말장치 임대료(장비임대료), 설치비, 할인이나 감면 등 요금내역과 할인내역이 정상적으로 부과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요금납부

- 시청자는 가입 당시 선택한 요금납부 방법에 따라 요금을 납부합니다.

●● 이의신청

-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시청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조사결과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다만, 시청자 요청에 따라 다음 요금납부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유료 선택상품 및 부가서비스

- 유료 선택상품 및 부가서비스의 경우 시청자의 청약에 의하여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요금은 통상 방송 상품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 유료 선택상품 및 부가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하였을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는 청약을 철회합니다.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철회를 요청하였을 경우, 월정액 요금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요금과 환불수수료(잔여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 요금납부에 대한 의견

- 요금납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업자 고객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하여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미디어인***에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mediin.or.kr/>

6) 이용계약 해지

- 유료방송 이용계약 해지는 크게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와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는 중도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 방송 상품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청자는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액 반환금 등 납부 없이 유료방송사업자가 체결한 이용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용계약 해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 상품 약정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반드시 계약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요금고지서,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시청자가 계약의 종료일까지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청자가 계약종료일 이후 중도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자동연장에 따른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시청자가 이용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서면, 구두,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지신청을 받은 유료방송사업자는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해지의사를 확인한 후 시청자가 요청한 해지 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 유료방송사업자가 해지처리를 하는 경우, 시청자는 단말장치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시청자 귀책사유(임의 해체, 수리, 이전, 타 기기와의 접속 등)로 단말장치에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료방송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처리가 완료되면, 시청자에게 1회 이상 전화, 전자우편, 우편, 문자서비스 등으로 해지완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유료방송사업자는 해지희망일 이후에는 이용요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가 지연되거나 이용요금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 해지

- 약정기간 만료 전 시청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정산비용이 달라 집니다.
- 개인적 사유로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시청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가 청구하는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해당 유료방송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용약관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할인반환금 정산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시청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할인 반환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해당 유료방송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인반환금 100% 감면)** 서비스 제공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입자가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사하는 건물이 특정 사업자와 단독 서비스 제공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할인반환금 50% 감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이사하는 건물의 소유주가 기존 서비스 이전을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 기타 사유로 인한 이용계약 해지

- 유료방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계약 해지 사유는 해당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가 이용약관서 기재사항 중 중요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에 대한 수정을 통보하였으나 시청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유료방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에 대한 해체를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유료방송사업자가 청구한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 유료방송 이용계약 해지에 대한 의견 제시

- 유료방송 이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업자 고객센터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미디어인***에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mediin.or.kr/>

5. 기타

1) 금지행위

- 금지행위란 행정법령에서 수범자에게 부과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부작위(不作爲) 의무를 말합니다.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은 수범자인 방송사업자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청자에 대한 금지행위

-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는 시청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호는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5호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6호는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입니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이용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2호는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3호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제4호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

-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85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송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3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 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시청자 의견 제시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9년부터 18개 유료방송사업자(MSO, 개별SO, 위성방송, IPTV) 및 관련 협회로 구성된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시청자(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시청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2) 재난방송

- 재난방송 등(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란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비·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말합니다.
 -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뉩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 민방위사태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국가적 재난,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재난방송 등의 실시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IPTV)는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IPTV)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등 매뉴얼'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특보, 스팟 등의 형식으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합니다.
-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인터뷰)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재난방송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 지상파TV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는 지진규모 5.0 이상(단, KBS는 규모 4.0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 중간 확인과정 없이 재난방송 등을 즉각 실시해야 하고,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사용하여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이 포함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상파TV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는 「기상법」에 따른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기상상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야 합니다.
 - 지상파TV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단,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는 한국수어방송과 영어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합니다.

●●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 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 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노약자, 심신 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정기적인 재난 방송 등의 모의훈련 실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재난방송 등의 요청 및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시기까지 재난방송 등이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해당 재난 등의 명칭',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 '해당 재난 등의 경보발령기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합니다.
- TV방송은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 통보문을 자막, 라디오방송은 음성으로 변환하여 방송합니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팝업형태로 표출합니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및 민방위경보는 TV에서 재난경보음을 동시에 송출해야 합니다.

❖ 재난방송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재난방송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미디어인***에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mediin.or.kr/>

3) 장애인방송(폐쇄자막)

- 폐쇄자막(closed captioning)이란 TV방송 프로그램의 음성 및 음향을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TV방송 화면에서 자막 켜기/끄기가 가능한 경우 폐쇄자막, 자막 끄기가 불가능한 경우 오픈자막(open captioning)이라고 합니다.
- 폐쇄자막은 청력이 약하거나 청력에 장애가 있는 시청자의 방송시청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대합실과 같이 방송프로그램의 음성 및 음향 기능을 켜기 어려운 장소나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방송을 시청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폐쇄자막 제공

- 「방송법」 제69조 제8항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장애인방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고시에 의거 필수지정사업자로 KBS 및 지역(총)국, EBS, MBC 및 지역 MBC, 지역민방,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100%, 위성방송사업자는 70%,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고시의무사업자는 70%의 폐쇄자막을 제공해야 합니다.
- 폐쇄자막은 사전에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사가 TV방송을 시청하면서 폐쇄자막을 실시간으로 제작합니다. 따라서 제작된 폐쇄자막이 시청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TV방송 프로그램에서 음성이나 음향이 등장하는 시점과 폐쇄자막이 등장하는 시점 사이에 약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 폐쇄자막 시청

- 지상파방송 직접수신 시청자는 TV리모컨의 자막 켜기/끄기 버튼을 이용하여 폐쇄자막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료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시청자는 TV리모컨으로 '설정' → '접근성' → '자막 켜기/끄기' 기능을 선택하여 폐쇄자막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방송 서비스마다 자막 켜기/끄기 메뉴의 배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시청자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폐쇄자막에 대한 의견 제시

- 청각 장애인 등 시청자는 TV방송프로그램에서 음성 및 음향이 등장하는 시점과 폐쇄자막이 등장하는 시점 간 차이로 인하여, 방송 시청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폐쇄자막을 실시간으로 제작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 폐쇄자막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정보센터 등에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4) 장애인방송(화면해설)

- 화면해설(Audio Description)은 TV방송 프로그램의 장면, 자막 등 시각적 요소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해설은 TV방송 프로그램에서 대화가 중단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삽입됩니다. 화면해설은 시각 장애인이나 시력이 낮은 시청자가 TV방송 프로그램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 화면해설 제공

- 「방송법」 제69조 제8항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장애인방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고시에 의거 필수지정사업자로 KBS 및 지역(총)국, EBS, MBC 및 지역 MBC, 지역민방,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10%, 위성방송사업자는 7%,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고시의무사업자는 7%의 화면해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 화면해설 제작을 위해서는 화면해설 작가가 TV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성우가 녹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뉴스와 같이 제작시간이 제한되는 프로그램에서는 화면해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화면해설 시청

- 지상파방송 직접수신 시청자는 TV수상기 내 음성다중 모드를 전환하여 부음성을 선택하면 화면해설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 유료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시청자는 TV리모컨으로 '설정' → '접근성' → '화면해설 켜기/끄기' 기능을 선택하여 폐쇄자막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방송 서비스마다 화면해설 켜기/끄기 메뉴의 배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시청자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화면해설에 대한 의견 제시

- 시각 장애인 등 시청자는 화면해설이 포함된 TV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낮다는 점, 재방송 편성비율이 높다는 점,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된다는 점 등에 대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화면해설 재방송 편성비율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해설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정보센터 등에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5) 장애인방송(한국수어)

- 한국수어(Sign Language)는 TV방송 프로그램의 장면, 자막 등 시각적 요소를 수어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수어는 청각 장애인이나 청력이 낮은 시청자가 TV방송 프로그램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 한국수어 제공

- 「방송법」 제69조 제8항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장애인방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고시에 의거 필수지정사업자로 KBS 및 지역(총)국, EBS, MBC 및 지역 MBC, 지역민방,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5%, 위성방송사업자는 4%,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고시의무사업자는 4%의 한국수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한국수어 제공은 수어통역사의 한국수어 통역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TV방송프로그램과 합성하여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한국수어 시청

- 일반적으로 한국수어 영상은 TV방송프로그램 화면 우측 하단에 노출됩니다. 한국수어 영상 크기는 전체 화면의 1/16 이상을 권장하며,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일시 편성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1/8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수어 영상은 TV방송프로그램 영상과 혼합(mixed)하여 제공됩니다. 한국수어 시청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각 장애인 등은 한국수어 영상 크기가 너무 작아 방송시청에 불편을 겪는 반면, 비장애인인은 한국수어 영상이 화면을 가려 방송시청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는 스마트 수어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수어방송 시청

- 스마트 수어방송이란 수어영상의 표시, 위치, 크기 등을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마트 수어방송은 2019년 7월 6개 채널(KBS2TV, MBC, SBS, JTBC, TV조선, YTN)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스마트 수어방송은 방송영상을 방송망으로, 수어영상을 인터넷으로 송신하고, 수신기는 각각 수신한 영상을 한 화면으로 혼합하여 재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청각 장애인 등은 방송영상과 수어영상을 나란히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화면분할),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겹치지 않게 시청할 수 있는 기능(화면분할, 위치조정), 수어영상 표시, 위치, 크기 등의 조절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수어방송 시청을 원하시는 경우 SK브로드밴드(IPTV),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LG 헬로비전(SO)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스마트 수어방송 상품'에 가입하고, 수어방송 전용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